

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(제3조 관련)

지정 범위	지정 기준
1. 신문사	○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자
2. 뉴스통신사	○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
3. 출판사 및 인쇄사	○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신고된 출판사 및 인쇄사로서 1일 인쇄능력이 A4 용지 기준 4만장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
4. 영화사	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(영화수입업자는 제외한다)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
5. 음반사 및 비디오물제작사	○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비디오물제작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
6. 문화·예술·체육·관광 분야 법인 또는 단체	○ 문화·예술·체육 또는 관광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
7. 호텔	○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